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여수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2. 15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견책 : 1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예탁금 지급업무 부적정

- 3급 최○○은 본인 부친(최●●)의 사업 관련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객 김◆◆(최○○ 지인의 동생)으로부터 예탁금통장을 건네받아 점포장의 승인없이 임의보관 하였으며, 동 예탁금통장을 이용해 김◆◆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김◆◆의 지급 청구서를 최○○ 본인이 위조하여 작성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2024. 1. 8. ~ 1. 15. 동안 예탁금 총 70,000천원을 3회에 걸쳐 임의청구 및 지급하였으며, 특히 2024. 1. 8. 동 지점에 근무하는 4급 임♣♣에게 김◆◆의 예탁금을 지급 처리토록 부당한 요청을 하여 4급 임♣♣을 위규행위에 가담케 한 사실이 있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복무규정」 제3조(법규의 준수), 제4조(성실과 공정)
2. 「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」 제1편 제42조(직원의 금지 사항), 제43조(점포장 · 책임자 확인 사항), 제46조(통장 · 인감 등 임의보관 제한), 제47조(일반지급절차), 제146조(목적), 제148조(필수점검자료), 제150조(창구책임자 준수사항)